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가단22804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 종결 2018. 11. 23

판결 선고 2018. 12. 2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8. 12. 접수 제33039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
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30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2016. 12. 경지인인 C, D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들도 채권자를 구하지 못한 사실, 피고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2018. 4. 3. 피고 B에 대한 27,649,651원의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0630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4. 11.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강희경

별지

1)원고는 2018. 9. 12.자 보정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